

2026

동물보건사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56분 완성

도서명 :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ISBN : 979-11-7393-084-3

발간일 : 2025-09-2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4,000원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목차]

제1권 수의사법

제1장 총칙(p6)

제2장 수의사(p9)

제2장의2 동물보건사(p23)

제3장 동물병원(p28)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p42)

제4장 대한수의사회(p45)

제5장 감독(p50)

제6장 보칙(p58)

제7장 벌칙(p61)

제2권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p68)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p78)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p83)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p137)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p154)

제6장 반려동물 영업(p164)

제7장 보칙(p185)

제8장 벌칙(p201~216)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권 수의사법

(이하 법)

[약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

자격시험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처방시스템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수의사 기능과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동물 건강/복지 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2. 정의

가.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면허 받은 자

나. 동물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 및 다음 동물

- 노새, 당나귀
-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 시험용 동물
- 이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다. 동물진료업(이하 진료업)은 동물 진료(사체 검안 포함), 질병 예방

라.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내 수의사 지도 하
동물 간호, 진료 보조하는, 장관의 자격인정
받은 자

마. 동물병원(이하 병원)은 진료업 하는
장소로서 신고한 진료기관

3. 수의사 직무

- 동물 진료/보건, 축산물 위생 검사

4.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가) 장관은

- 5년마다 수립/시행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내용

- 정책목표, 추진방향
- 지원체계 구축/개선
- 전문인력 양성/활용
- 기술 향상/지원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수의사

4~16조

1. 면허

- 수의사가 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장관
면허 받아야 함

2. 결격사유

가)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예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
직무할 수 있다고 인정시

나)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다)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의제), 면제되지 않은 자

3. 면허의 등록

- 장관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발급
- 면허증은 다른 자에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못함

4. 국가시험

가. 매년 장관이 시행

- 동물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 지식과 기능에 대해 실시
- 장관은 시험 관리 능력 있는, 수의업무 전문 행정기관에 관리 맡길 수 있다

나. 응시자격

1) 결격사유 없는 다음 사람

a) 수의학 전공 대학(수의학과 설치 대학
수의학과 포함)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 받은
자

- 6개월내 졸업해 학위 받을 자 포함

b) 외국에서 상기 해당 학교(장관 고시
인정기준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 받은 자

2) 졸업예정자는 해당 기간에 학위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 없음 간주

다. 수험자의 부정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시험에서 부정행위시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후 두 번까지
응시못함

5.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의사사 아니면 동물 진료못함

(예외)

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받은 자가 수산생물
진료

나) 수의학 전공 대학(수의학과 설치 대학

수의학과 포함)에서 수의학 전공 학생이

- 수의사 자격 가진 지도교수 지시/감독 받아
전공 실습 진료행위

- 수의사 자격 가진 지도교수나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지시/감독 받아 축산 농가,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진료

다)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 허가나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장관 고시 가축 진료

라) 도서/벽지 이웃 사육 동물을 비업무로
무상 진료

마) 부상당한 동물 응급처치

6. 진료의 거부 금지

- 진료업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요구받은 때 사유없이 거부못함

7. 진단서 등

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발급 또는 의약품 처방/투약 못함.

- 처방전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포함

- 직접 진료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하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해 발급 가능